

## 고용촉진장려금 안내

2020.1.1.부터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전 사업참여신청 불필요

### 사업 목적

※2020년 개정사항 **적색** 표시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b>                      취업지원 대상 구직자(실업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지원이 되는 사람</li> <li>1) <b>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 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li> </ul> </li> <li>• <b>II 유형(중장년층)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b>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li> </ul> <p>※ 2019년 1월 이후 참여하여 2020년 1월 이후 채용된 사람부터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I 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li> <li>•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li> </ul> <li>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li>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 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름 학교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름학교를 마친 사람

###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법무부)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 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 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 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2020년까지 채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 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 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 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 센터가 운영하는 「취업 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 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전직스쿨에 참여한 사람은 2020년까지 채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고용노동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 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2019년 1월 이후 참여하여 2020년 1월 이후 채용된 사람부터 지원**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취업지원프로그램 면제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곤란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이 되는 사람

**1)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
  -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고시 2019-33호) 별지 2 중증장애인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에 따라 한국장애인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

**2)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여성실업자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 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
  -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한다.)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 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 ②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 ③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3) 섬 지역 거주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 **지원제외 근로자**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1호라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적용 제외된 경우는 지원 가능**

**4)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5)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

지원 제외

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대규모기업이 고용한 경우(구직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워크넷으로 확인)

**6) 재학생.**

다만,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포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를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다만,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한 이후 취업한 경우도 인정

**7)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지원제외 사업주**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을 새로 고용한 경우

3)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선 재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다시 고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

4)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선 재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고용하였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다시 고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

5)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지원 요건**

• 상기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 수준**

• 요건 충족 시,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
- 신규고용한 지원대상자 30명 초과 시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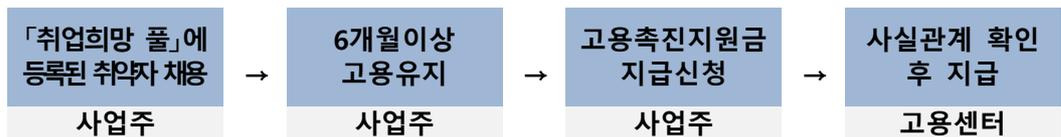
• (감원방지의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중복지원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그 외에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중복지원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확인 필수.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 프로그램	주관
1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
12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13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4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 유효

**사업추진체계**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1350), 고용노동부